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9.7.)

조 례 안 · 일 반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미영]

목 차

1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7	거창군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7
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37
10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1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7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1. 8. 10.

나. 발 의 자 :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권순모 ·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권재경 · 이재운 ·
김향란 · 표주숙 · 이흥희 · 신재화 · 박수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이용지침 등의 제작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마. 안전문화 조성 등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바. 경비의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8. ~ 8. 2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 마련과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 제작, 실태조사, 이용자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관계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70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21. 8. 10.
- 나. 발 의 자 :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신재화 ·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권재경 · 이재운 · 김향란 · 표주숙 · 이홍희 · 박수자 · 권순모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라.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안 제4조)
- 마.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 바. 점검장비 지원(안 제6조)
- 사.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7조)
- 아. 실태조사(안 제8조)
- 자. 협 조(안 제9조)
- 차.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파. 점검사항의 표시 등(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8. ~ 8. 2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군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시장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과 요금 감면 차량의 경우 10원 미만 단위로 정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안 별표1)

구 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주간제	야간제
현 행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	500	250	5,000	50,000	35,000
		노외 주차장	300	150	3,000	30,000	21,000
개정안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9. ~ 8.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용어 변경과 시장주차장(노외주차장 포함)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발생하는 장기주차와 요금감면차량 정산 애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이하 생략~

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란“을 ““감정평가법인등“이란“으로 한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거창창포원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리·운영하고 지역여건이나 국내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시설별 운영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1) (현행)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2) (변경)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나. 법률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 적용 규정 및 용어 등 정비(안 제1조·제2조·제5조·제6조)
- 다. 정기휴원일 명확화, 임시휴원일 규칙으로 위임(안 제8조)
- 라. 시설별 운영 시간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9조)
- 마. 자전거 이용료 및 감면 근거 신설(안 제20조·별표 1·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8조의5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8. ~ 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창창포원의 지방정원 등록에 따른 법 적용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기휴원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자전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13. (생략)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1) 용어 변경(안 제20조의2·제48조·제61조)
 - 2)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제8조·제31조·제33조·제35조·제58조)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신설(안 제15조제1항)
- 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완화
적용 사유 삭제(안 제20조의3제3항)
- 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15조의2·제26조·제30조의2)
 - 1)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2)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 3) 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마. 법령위임 필수조례 신설(안 제16조의2·제57조의3)

- 1)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 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 30퍼센트

바.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범위를 법에서 정한만큼 최대한 확대하여 반영(안 제27조)

사.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57조의2·제61조의5·제71조)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 종결 후 30일 후

아. 공동위원회 준용 신설(안 제74조의2)

자. 법령개정사항 반영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개정(안 별표 1~별표 5,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0조·제28조·제28조·제59조·제68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5조·제43조·제57조·제59조·제72·제76조·제78조·제85조·제93조·제113조의3, 별표 1의2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30. ~ 8. 19.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과 공동위원회 준용 신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 정부합동감사 권고사항인 법령위임 필수조례 신설과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 반영하였으며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적용 사유를 삭제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1. 4. 14.>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 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
-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비목록

□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법령명	조문	법령위임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제50조의2제1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함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법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미정비목록

법령명	조문	법령위임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제2항)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0조제2항)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제1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과제 제목	문제점	개선방안	비고
지구단 위계획 구역에 서의 건축 제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건축기준 완화요건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건축기준 완화의 혜택 축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기준완화 적용	시도지사 권한으로 시도의 계획조례에 규정할 사항임.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6
기반시 설설치 비용 산정기 준명 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인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미치 집행이 곤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용지 환산계수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불편해소	
이행보 증금 예치금 액의 산정 및 예 치방법 명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산정 및 집행이 곤란하고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발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불편해소	
지구단 위계획 의 변 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5.17. 시행)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제한할 우려	상위법령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계획 추진의 효율성 도모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대하며 향노화힐링특구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특례를 정하여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신설함(안 제5조의2·별표 1)
 - 1) 행정안전부 협의 내용
 - (가) 위치: 가조면 일부리 1307
 - (나) 종류: 지주 이용 간판 1개
 - (다) 규격: 10미터×5미터×10미터
 - 2) 향노화힐링특구에서 표시가능 광고물 등은 지주이용간판으로 한정
-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19조)
- 다.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사유를 명시함(안 제26조)
- 라. 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의2·제10조의4·제20조
-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6. 15. ~ 7.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별표 3)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고 향노화힐링특구 광고물 등 표시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계시대 관리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0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광고물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영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복지형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거창향교 냉난방 시스템 설치 관련, 전기용량 증설 및 전기요금 증액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사업
 - 사업자 : 거창향교 전교 박정제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1월(3개월간)
 - 사업량 : 12kw
 - 사업비 : 25,200천원(공모사업비 90%, 자부담 10%)
 - 기대효과 : 2,500천원/년 전기요금 절감

나. 추진사항

- 2020. 10. : 2021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경제교통과)
- 2021. 5. : 도시공원 점용 허가(산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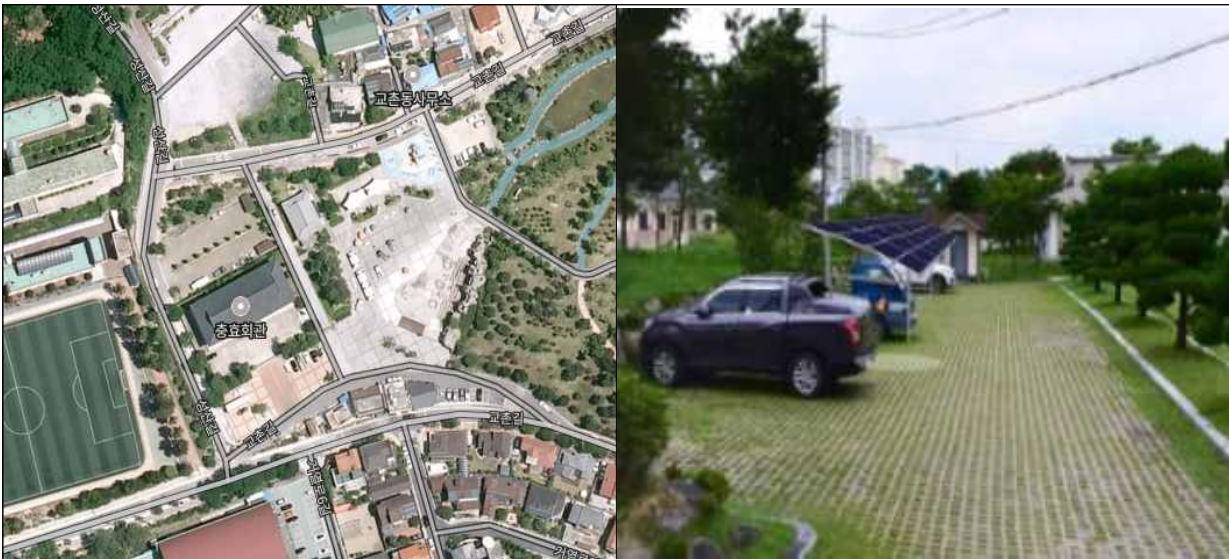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지목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설치 용량	비 고
거창읍 가지리 318-1	유지	7,779㎡	60㎡	12kw	

라. 향후 추진계획

- 2021. 11. : 공사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경제교통과)

마.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인 주민복지형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나.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다. 사업비 : 1,528백만원/연
(국 764(50%), 도 229.2(15%), 군 534.8(35%))
 - 주택 : 1,204백만원(국 602, 도 180.6, 군 421.4)
 - 비주택 : 172백만원(국 86, 도 25.8, 군 60.2)
 - 지붕개량 : 152백만원(국 76, 도 22.8, 군 53.2)
- 라. 사업량 : 420동/연(주택·비주택 철거 390, 지붕개량 30)
- 마. 위탁비용 : 122백만원/연(사업비의 8%)
- 바.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업체 선정, 계약 체결
- 슬레이트 면적조사,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 아.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업체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참가자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 ⇒ 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자. 향후 계획
 - 2021. 7. :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
 - 2021. 9. ~ 10. : 민간위탁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 2022. 1.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4. 참고사항

가. 그간 추진현황

-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2013년) (단위 : 동)

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10,784	7,914	55	1,564	917	61	273

○ 추진실적

(단위 : 동)

구 분	철 거 현 황			잔여 슬레이트
	철거율(%)	계	환경과 도시건축과	
계	23.0	2,491	2,304	187
2013년		138	129	9
2014년		162	100	62
2015년		262	199	63
2016년		189	136	53
2017년		368	368	-
2018년		230	230	-
2019년		358	358	-
2020년		568	568	-
2021년		216	216	-
				추진 중

○ 추진방법

- 2013~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2017년 : 직접 수행(민간경상보조사업)
- 2018년 : 직접 수행(시설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개정(20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20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2021년 : 민간위탁 추진(한국석면안전협회)

○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20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 확대,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나.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

- 2013~2016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
-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 수행하였으나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2019~2021년 현재까지 민간위탁 중임

다.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1.1. 환경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군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지붕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2013년부터 2016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장감독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을 보완하고 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 만료예정(21. 12. 25.)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 나. 주기장 현황

명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치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면적	5,863㎡	건축면적	99.75m (30평)	주기면수	약 120대
시설물	관리동 1동 (사무실, 회의실 등)				

- 다.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자 조건 : 거창군 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자 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정량+정성)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공개모집)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부과대상 : 수탁단체)
 -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 ※ 가격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관리동) 과세표준가액
- 사용기간 : 3년(1회에 한해 갱신 가능)

마.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군 의회 동의 : '21.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인) : '21.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모집 공고 : '21.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1. 12.
- 행정재산 관리위탁, 민간위탁 공보게재 : '21. 12.
- 공영주기장 위탁운영(예정) : '21. 12.

바. 현장사진





4.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현황

- 수탁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거창지회
- 수탁기간 : 2019. 12. 26 ~ 2021. 12. 25.(2년) / 최초 위탁
- 이용현황 : 일 평균 50대
- 위탁료 : 2019년 2,102,070원 2020년 3,565,050원

나.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9조제4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3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탁료를 순조롭게 징수하고 있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수요자 중심으로 주기장을 관리 운영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 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2021.12.31.) 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대지면적 : 36,376㎡ (토지소유자 : 거창군)
 - 연 면 적
 - 당 초 : 8,219㎡(선별3,499㎡, 저장1,780㎡, 기타 2,940㎡)
 - 1차보완 : 2,874㎡(선별1,171㎡, 저장1,467㎡, 기타236㎡)
 - 2차보완 : 1,510㎡(선별1,180㎡, 저장330㎡)
 - 처리능력 : 연간 15,000톤 처리
 - 선별시설 : 1일 50톤 처리, 2조식 프리트레이방식, 54라인 38등급
 - 저장능력 : 저온저장고 3,015톤 저장(당초 1,440톤→ 보완 3,015톤)

나. 위탁사무

- 시설 :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다. 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3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라. 소요예산 : 없음

마. 향후계획

- 운영주체 위탁 군의회 동의 : 2021년 9월
- 운영주체 공모 모집 및 선정 : 2021년 9 ~ 10월
- 거점APC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년 11월
- 위탁 운영 실시 : 2022. 1. 1 ~ 2024. 12. 31.

4. 참고사항

가. 그간의 추진사항

- 2005. 5. 19. : 서북부경남거점APC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2008. 9. 9. ~ 2009. 10. 25. : 서북부경남거점APC 건립
- 2009. 11. 17. ~ 2014. 12. 31. : (주)NH유통 1차 위탁 운영
- 2012. 7. 27. :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사업 1차 준공
- 2015. 1. 1. ~ 2018. 12. 31. : (주)NH유통 2차 위탁 운영
- 2019. 1. 1. ~ 2021. 12. 31. : (주)NH유통 3차 위탁 운영
- 2019. 12. 20. :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사업 2차 준공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 제15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 6. 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 6. 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 6. 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 하도록 한다.(개정 2013. 6. 1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8.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거창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2021.12.31.)됨에 따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마을센터와 지역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사무명	주요내용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 거창군 단계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 마을만들기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 마을만들기 관련 지역 현안해결과 사후관리 - 지역개발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	- 사업비 : 350백만원 정도 / 매년 농식품부 공모 -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주민교육과 경험습득 지원, 신규공모-사업추진-사후관리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육성 및 확산 등

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안)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위 치 :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신활력공유센터 준공 후 이전)

○ 구 성 원 : 센터장 1명(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 구성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며, 센터역량강화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채용승계

다. 소요예산

구 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시군역량강화사업
합 계	87,000천원(군비)	350,000천원 (국70%, 도9%, 군 21%)
인건비	67,200천원 - 사무원 2,100천원×2명×12개월 - 초과 및 출장 300천원×2명×12개월 - 4대보험 등 800천원×12개월	78,000천원 - 센터장 2,500천원×12개월 - 사무원(팀장) 2,300천원×12개월 - 초과 및 출장 50천원×2명×12개월 - 4대보험 등 1,000천원/월
운영비	19,800천원 - 사무집기 임대·구입 - 사무용품 구입 - 전기·통신 요금 등	
사업비		272,000천원 -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 제20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와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해당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계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 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